



NPO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NPO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박지환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 송시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신옥미 기획실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오현석 공인회계사(나라살림 연구소)
-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보다 손쉽고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수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NPO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 변호사님들을 집필위원으로 모시고 NPO 법률지원 실무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정, 2018년 8월부터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NPO 법률지원 매뉴얼』은 NPO를 설립준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 및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실무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NPO의 설립, 운영, 회계와 세무, 모금, 노동관계,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기타 정보공개청구 및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문제까지 NPO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단계적이고 실무적인 법률지식을 상세히 담고 있어, 향후 NPO 법률지원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NPO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해주신 TF팀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본 매뉴얼을 통하여 NPO를 통한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실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여러분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CONTENTS

제1장 NPO의 설립 1

1.	NPO란 무엇인가? 3
가.	NPO란 3
나.	법인이란 4
2.	비영리단체의 분류 7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8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9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11
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12
마.	비법인사단·재단 12
3.	비영리단체의 설립 14
가.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 14
나.	비영리법인의 기관 26
4.	비영리단체의 정관 및 등기 31
가.	비영리단체의 정관 작성 31
나.	비영리법인의 등기 31
5.	비영리단체의 소멸 31
가.	비영리법인의 해산 31
나.	비영리법인의 청산 33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청산 33

제2장 NPO의 운영 37

1.	비영리법인의 운영 39
가.	비영리법인의 기관 39
나.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 44

다.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의 변경과 처분 -----	44
라. 비영리법인의 등기 -----	45
마. 비영리법인의 장부 비치와 사업계획·결산보고 -----	47
바. 비영리법인사무에 대한 감독과 제재 -----	48
2. 공익법인의 운영 -----	50
가. 공익법인의 기관 -----	50
나. 공익법인의 재산 -----	53
다. 공익법인사무에 대한 보고와 주무관청의 감사·제재 -----	55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	57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	57
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의 제출 -----	58
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	58
4.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	59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	59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	60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	64
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등 -----	65
제3장 NPO의 회계와 세무 -----	69
1. 개관 -----	71
가. NPO의 예산과 결산 -----	71
나. NPO의 수입과 지출 -----	71
다. NPO의 회계와 세무 -----	72
2.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 -----	73
가. 정관상 목적사업 -----	73
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	73
3. NPO의 회계 -----	76
가. 회계기준 -----	77

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	78
다. 재무제표 -----	78
라. 구분경리 -----	81
마. 비영리조직의 주요 회계처리 -----	83
4. NPO의 증여세 과세유예와 의무 -----	86
가. 공익법인의 과세유예 -----	86
나. 공익법인의 의무 -----	87
다. 공익법인 등의 협력의무 -----	91
5. NPO의 납세의무 -----	95
가. 부가가치세 -----	95
나. 법인세 -----	99
다. 소득세 원천징수 -----	107
라. 기타 -----	110
6. NPO 관련 조세 특례 -----	111
가. 양도소득세 특례 -----	111
나. 법인세 특례 -----	112
다. 지방세 특례 -----	113
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특례 -----	115
제4장 NPO의 모금과 기부금품법 -----	117
1. 기부금품법 -----	119
가. 기부금품의 개념 -----	119
나.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119
다.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22
라. 기부금품의 모집 -----	127
마. 기부금품의 사용 -----	129
바. 기부금품법 개정안 -----	130

2.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130
가. 기부금단체 지정의 의의 -----	130
나. 지정기부금단체 -----	131
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135
3. 기부 관련 세제혜택 -----	137
가. 법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137
나.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138
다.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 평가 -----	140

제5장 NPO의 노동관계 143

1. NPO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 -----	145
가. 들어가며 -----	145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146
다. 비영리단체의 사용자 -----	152
라. 노동법상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문제 -----	153
마. 최소한 이것만은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 -----	157
2. NPO 노동관계의 단계별 쟁점 -----	159
가. 모집·채용단계 -----	159
나. 고용유지단계 -----	161
다. 노동관계의 종료단계 -----	169
3.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관 안내 -----	172

제6장 NPO와 지적재산권 175

1. 지적재산권 조감 -----	177
2. 저작권 일반 -----	178
가. 저작물의 정의 -----	178
나. 저작권의 정의 -----	178

3. NPO 저작권 분쟁 주요 사례로 대비하는 저작권 실무 -----	180
가. 폰트 프로그램 사례로 이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과 사용 -----	180
나. 사진 저작물 판례로 보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	184
4.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	186
가. 뉴스 저작물(어문 저작물, 텍스트)의 이용 -----	186
나. 사진 저작물의 이용 -----	188
다. 음악 저작물의 이용 -----	189
5. 저작권의 보호방법 – NPO 단체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때 -----	191
가.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발생 -----	191
나.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필요 시 저작권 등록 -----	192
6. 기타 NPO와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실용신안권 -----	194
가. 특허와 비교한 실용신안권의 특징 -----	194
나. 실용신안의 출원 방법 -----	195
제7장 NPO와 개인정보보호 -----	197
1. 개인정보보호 법령 일반 -----	199
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체계 -----	199
나. 개인정보의 정의 -----	200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NPO 개인정보보호 실무 -----	201
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약 -----	201
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소개 -----	201
다.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 방안 -----	214

제8장 NPO가 알아야 할 그 외 내용 217

1. NPO와 정보공개청구	219
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중요성	219
나.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령	221
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221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222
마. 불복절차	224
2. NPO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228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228
나. 부정청탁 금지	230
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231
[부록] NPO 신고 일정	238

제1장

NPO의 설립

제1장

NPO의 설립

1

NPO란 무엇인가?

가. NPO란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은 반드시 특정한 조직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1인 단체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하는 활동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사람(혹은 재산)이 모여 결사체를 이루어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NPO와 NGO를 많이 사용합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님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단체)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공익단체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시민운동 초기기인 1990년대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강조하고자 NGO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 정부뿐 아니라 시장에 대응한 활동으로 넓어지면서 NPO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아리 소모임 임의단체	등록				
	비법인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¹⁾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국세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	특별법	

나.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 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필요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²⁾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cf.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2)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비영리법인은 영리활동을 전혀 할 수 없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的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바, 민법을 설립근거 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예: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2 비영리단체의 분류

〈비영리단체 비교〉³⁾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임의단체 ⁴⁾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협동조합기본법	근거법 없음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 포함)	비영리공익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 포함)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명칭	사단법인 명칭 사용X 무방	재단법인 명칭 사용X 무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동일	비영리민간 단체 사용 X 무방	'사회적협동조합' 문구 포함되어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명칭 사용 불가
설립요건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사단법인과 동일	재단법인과 동일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등록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정관작성+설립자 기명날인으로 성립
영리·비영리	영리·비영리 가능	비영리만 가능	비영리만 가능	비영리만 가능	공익목적사업이 40% 이상이어야	영리·비영리 가능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이사회	사단법인:사원총회 재단법인:이사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부금 대상단체	요건 구비 시 가능	요건 구비 시 가능	해당	요건 구비 시 가능	요건 구비 시 가능	요건 구비 시 가능

3) 안상운, NGO·NPO 법률가이드북, 2011, 아르케 참조.

4) 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상 친목회, 동문회, 계모임,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등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도 그 활동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다만, 임의단체가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자번호증은 해당 업태와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을 득하여 수익(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차후에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밖에 민법 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제39조).

Q.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반드시 사람만 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주식회사)이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 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합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비교〉⁵⁾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것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법인격을 가진 것
성격	사원총회에 의한 자율적 법인	설립자 의사에 구속되는 타율적 법인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작성(민법 제40조)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민법 제43조, 제48조)
정관변경	총회 2/3 이상의 찬성 + 주무관청 허가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있을 때 한함(민법 제45조) ② 명칭/주소지는 일정 경우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아도 변경가능(민법 제45조) ③ 목적달성을 시 : 주무관청허가-변경 가능(민법 제46조)
기관	사원총회·이사(필수기관), 이사회·감사(임의기관)	이사(필수기관), 이사회·감사(임의기관)
의사결정	사원총회	설립자의 의사+이사회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⑥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⑦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총사원의 3/4 이상 찬성)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⁶⁾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공익법인법 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형에 따라 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5) 안상운, NGO·NPO 법률가이드북, 2011, 아르케 참조.

6) 정식 법명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이하 ‘공익법인법’으로 약칭합니다.

Q.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법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헷갈립니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 2. 13.>

[시행일 : 2019. 1. 1.]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서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② 설립발기인 명단, 발기인 인감증명서	② 단체의 회칙(정관)
③ 정관	③ 당해연도·전년도 총회 회의록
④ 창립총회 회의록	④ 당해연도·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⑤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임원 인감증명서	⑤ 전년도 결산서
⑥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 회원명부
⑦ 회원명부	⑦ 단체 소개서
⑧ 재산목록, 재산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⑧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⑨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⑩ 법인소개서	⑩ 대표자 인적사항
⑪ 법인이 사용할 인장	

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마. 비법인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종,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다6307 판결), 아파트 부녀회(대법원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Q.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 임의단체로 남을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상시적으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에의 응모요건에도 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임의단체로 설립하는 경우에 자체 정관을 만들고 최소한의 조직체를 갖춰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면 되어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⁷⁾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도가 낮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도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류(관할세무서)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또는 규약, 회칙)
4. 대표자 증빙서류: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5.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6.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등)
7.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참고판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 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다 6307 판결 등).

7) 비영리법인도 회계업무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도 해야 합니다.

3 비영리단체의 설립

가.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

(1) 사단법인

(가)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① 법인의 명칭 및 목적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⁸⁾

②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 정관기재사항⁹⁾

제1장 총칙(단체의 명칭, 목적, 주요사업, 소재지 등을 명시합니다.)

제1조(명칭) 이 단체(또는 법인)의 명칭은 ‘0000’이라 한다.

제2조(목적)_ 단체의 설립목적에 대해 기재합니다.

제3조(사업)_ 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합니다.

8) 동일명칭의 확인을 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에서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회원의 종류와 자격·가입·탈퇴, 임원의 선임·역할 등을 명시합니다.)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제8조(임원의 구성)

제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직무)

제3장 이사회 및 총회(의결구조를 명시합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제13조(이사회의 소집)

제1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제15조(총회의 소집)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8조(회의록의 작성)

제4장 사무국(집행기구를 명시합니다.)

제19조(사무국의 설치와 구성, 임면)

제5장 회계 및 재정(수입구조와 회계보고, 감사 등을 명시합니다.)

제20조(재산의 구분)

제21조(수입금)

제22조(회계연도 및 보고)

제6장 보칙(정관변경, 해산시 청산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제23조(정관변경)

제24조(해산 및 합병)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부칙(정관 시행일 및 정관개정 이력 등을 명시합니다.)

제1조(시행일)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Q.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고,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및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 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나)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
- 9)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그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특별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¹⁰⁾
2.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¹¹⁾
3. 정관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¹²⁾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¹³⁾
6.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¹⁴⁾
7.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¹⁵⁾

-
- 10)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11)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12)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 13)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 14)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 15)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유효성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 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참고판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5 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3주 내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3. 이사자격증명서(정관 또는 총회 회의록 제출)
4. 취임승낙서(인감으로 날인) 및 인감증명서
5. 이사 주민등록등(초)본
6. 법인 설립허가서
7. 자산총액 증명서(재산목록)
8. 법인 인감신고서
9.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0. 공증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의사록
11.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준비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창립총회의 경우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단법인설립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는 점은 재산의 출연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Q.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추어야 하나요?¹⁶⁾

주무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주무관청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 상의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 즉,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33조, 민법 제47조 제1항 및 민법 제48조제1항).¹⁷⁾

■ 재산출연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 제2항 및 민법 제48조 제2항).

16) 아산나눔재단·법무법인 지평, 비영리단체설립·운영 관련 법률매뉴얼, 2018, 20면.

17)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 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3) 비영리민간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절차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은 사단법인의 설립과 거의 같습니다. 단체 설립준비단계에서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설립준비를 마치면 주무관청을 확인하여 단체 등록신청을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등록을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협의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2. 회칙(정관) 1부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간인, 총회 참석자 명부, 개최사진) 각 1부
 4.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설명이 포함된 사진자료, 인터넷자료,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7.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1부
 8. 사무실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① 회원명부, ② 단체소개서(조직기구 표 포함)를 제출하면 되지만, 법인 결산서류로써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제2항).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② 재정지원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③ 우편요금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 사회적협동조합

(가) 발기인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 제91조).

(나)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¹⁸⁾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는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258~275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다)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¹⁹⁾

(라)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마) 설립인가 신청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

19)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2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신청서
2. 정관 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5.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²⁰⁾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①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②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20) ①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바) 사무인계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사) 출자금 등 납입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아)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나. 비영리법인의 기관

(1) 임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 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²¹⁾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이사

(가) 임원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이사의 직무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 ⑥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및 제70조) 및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76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61조, 제65조, 제97조).

(다) 이사회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이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64나1106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2조, 제121조).

(3) 감사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6조, 제67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사원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

(4)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사원총회의 구성원인 사원(社員)은 법인의 직원 혹은 간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직원도 사단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사단법인의 최소 사원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성을 인정받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이라면 그 구성원인 사원이 낸 회비도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67조, 제69조, 제70조)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Q. 갑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갑은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 소집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는 각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방법은 정관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70조, 제71조).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75조,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4**비영리단체의 정관 및 등기****가. 비영리단체의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²²⁾

나. 비영리법인의 등기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5**비영리단체의 소멸****가. 비영리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22)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참조 <https://beautifulfund.org/aboutus/policy/>
참여연대(비영리민간단체) 정관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about_PSPD/1254892

■ 법인의 해산사유

1.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79조).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81누363 판결).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습니다.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

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95조, 제80조). 비영리민간단체의 해산은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나. 비영리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겸사·감독합니다 (민법 제95조).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청산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는 해산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가)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 제103조, 제110조).

(나) 해산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다)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04조).

(라)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83조).

(마)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에 따른 등기신 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됩니다.

(3)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4) 설립인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해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8.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2018.
- 아산나눔재단·법무법인 지평, 비영리단체설립·운영 관련 법률매뉴얼, 2018.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http://www.15445077.net>), 2018.
- 서울시NPO지원센터(<http://www.snpo.kr>), 2018.
- 안상운, NGO·NPO 법률가이드북, 2011, 아르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2018, 법제처.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단체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 설립신공, 2017.

제2장

NPO의 운영

제2장

NPO의 운영

1

비영리법인의 운영

가. 비영리법인의 기관

(1) 이사와 이사회

(가) 이사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며, 이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민법 제40조, 제43조). 민법은 이사의 임면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으로 선임권자나 선임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²³⁾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정관에 이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사원이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관에 이사의 자격을 사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원인 이사가 제명 또는 그 이외의 사유로 사원자격을 상실하면 동시에 이사의 지위도 상실합니다.²⁴⁾ 이사는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따라 피선임자가 법인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임하며, 이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취임을 승낙한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²⁵⁾

23) 박수곤, 공익법인의 조직과 운영, 공익법인연구, 2015, 99면.

24) 박수곤, 공익법인의 조직과 운영, 공익법인연구, 2015, 105면.

25)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370면.

Q. 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민법은 사단법인의 이사 겸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상의 제한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의 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 감사²⁶⁾와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백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감사의 직무 성질상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는 것’으로 통상 해석되고 있습니다.²⁷⁾

이사의 해임과 퇴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²⁸⁾ 따라서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65336 판결).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81다614 판결).

한편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85누884 판결).

26) 참고로 민법상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에 감사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7)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389면.

28) 대법원도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함으로써 법인과 이사가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0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등 참조).

Q. 임원의 사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위와 같이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전제할 경우, 수임인인 이사는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그리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다31260 판결). 그러나 민법상의 동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정관 등에서 사임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방식대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7109 판결).

(나)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조). 정식이사가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기관입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의2).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98두16996 판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이사에 갈음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임시기관입니다(민법 제64조).

(다) 이사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이 결정됩니다.

Q. 이사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된 것이라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입니다(대법원 85누884 판결).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여 결과적으로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8다3534 판결).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대법원 98다26187 판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의 대리의결도 가능한가요?

사원총회에서 사원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의 표결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위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²⁹⁾ 이사회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0다2441 판결). 그러나 원격통신수단(온라인)에 의한 결의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참조).

(2) 사원총회**(가) 총회의 소집**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합니다.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29) 안상운, NGO·NPO 법률가이드북, 2011, 아르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개최됩니다.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다만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총회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 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6다카2705 판결).

(나) 총회의 결의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나,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민법 제75조는 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민법 규정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단법인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³⁰⁾

Q. 사원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발간한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에 의하면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³¹⁾

30)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445면.

31)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457면.

나.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이 인정됩니다(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봅니다(대법원 95 누4810 판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54조).

다.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의 변경과 처분

(1) 기본재산의 의의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설립단계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본재산의 변경과 처분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를 구성하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이나 처분은 정관의 개정으로서 정관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³²⁾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65마704 결정).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는 사후허가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대법원 96다27988 판결).

Q.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로 기본재산의 증가나 기본재산 편입 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대법원 78다1038 판결 참조).

라. 비영리법인의 등기

(1)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목적, 명칭, 사무소,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련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임원의 변경, 이사장의 주소변경, 기본재산의 변경이 주로 문제됩니다. 등기할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52조, 제53조).

32) 참고로, 대법원 등기예규 제886호에서도 기본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동일인이 이사에 재선되어 중임 또는 종임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동일인이 이사에 재선되어 중임·연임이 된 경우에 비록 그의 성명·주소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사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 및 직무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법인 외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조 참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위 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이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합니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1조).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2) 등기해태 시의 제재

법인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의 변경사항 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조 제1항).

마. 비영리법인의 장부 비치와 사업계획·결산보고

(1) 장부의 비치와 보존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5조). 민법은 사원명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원구성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설립허가서도 법인의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에 관한 서류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 전표, 증빙서류 등은 10년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총회 의사록 등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서류들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결산보고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규칙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바. 비영리법인사무에 대한 감독과 제재

(1)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37조). 감독대상인 법인의 사무에는 법인의 활동업무(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산상황(기본재산 등)에 대한 검사·감독도 포함되며, 주무관청이 법인사무를 검사·감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규칙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습니다(민법 제38조).

(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5012 판결). 한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는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³³⁾

(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독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

33)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81면.

으로 설립허가조건의 위배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대법원 76누145 판결).

(다)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1누363 판결). 그리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두25012 판결).

(3) 과태료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의 직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이들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조).

- 각종 등기를 해태한 때
- 재산목록작성·사원명부의 비치를 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법인의 사무에 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또는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한 때
- 이사 또는 청산인(청산법인의 경우)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청산인이 채권신고에 관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를 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개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불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재판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제248조).

2

공익법인의 운영

가. 공익법인의 기관

(1) 이사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미성년자 등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이사가 재임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³⁴⁾를 포함).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함
- 출연자 또는 이사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의 관계에 있는 사람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주무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34) 본항과 ③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i)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 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지배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ii)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iii)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이사회와 감사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입니다.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³⁵⁾·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장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사 전원이 모여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된 때나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8조).

이사회에서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바, 이처럼 본인의 서면결의도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석상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³⁶⁾ 이사회의 의결은

35) 재산취득이 이사회 의결사항이기는 하나,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36)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333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9조 참조).

공익법인법상 감사는 원칙적으로 2명을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 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일정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 중 1명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공익법인법 제10조).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전술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위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법 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0조).

나. 공익법인의 재산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시행령 제16조).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³⁷⁾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4조, 제16조).

(2) 기본재산의 변경과 처분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1. 매도·증여·임대³⁸⁾·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장기차입의 경우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37) 다만 상장주식과 같이 평가액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자산의 경우, 실무상으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분할 등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오정민,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2018, 40면).

38)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외에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97다9970 판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9조). 한편 공익법인에서의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행위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0다20090 판결).

Q.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한 후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 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8조의3).

다. 공익법인사무에 대한 보고와 주무관청의 감사·제재

(1) 법인사무의 보고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순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받아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성실공익법인³⁹⁾은 위의 서류 외에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 기본재산의 목록

(2) 주무관청의 감사와 제재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7조 제1항).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

39)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중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을 말합니다(상속·증여세법 §16②2, 같은 법 시행령 §13③).

-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 ⑥ 장부의 작성·비치
- ⑦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⑧ 상증법 §48 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14조).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공익법인법 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등록변경의 절차는 등록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며,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

조).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나.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8조, 제9조).

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4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합니다.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설 수 없고,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원의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제한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1조, 제23조, 제24조).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1조, 제25조).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탈퇴 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0조).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1) 총회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29조).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으로 대의원을 구성하여 대의원총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30조, 제31조).

(2) 이사회와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3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은 2회로 제한됩니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34조,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됩니다. 다만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36조).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도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

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39조, 제40조).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41조).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고,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42조, 제4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제44조, 시행령 제10조, 제20조).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45조).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시행령 제21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지역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기타 공익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 제95조).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다만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까지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0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②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③ 조합원 명부, ④ 회계장부, ⑤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 사항

에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⁴⁰⁾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 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며,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제98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위 기간 이내에 30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보나,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40)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래 공시를 대신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사업결산보고서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

[참고자료]

- 박수곤, 공익법인의 조직과 운영, 공익법인연구, 2015.
-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 오정민,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2018.

제3장

NPO의 회계와 세무

제3장

NPO의 회계와 세무

1 개관

가. NPO의 예산과 결산

NPO는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여 그 범위에서 집행을 한 후, 결산을 하는 예산과정을 수행합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지출)로 구성합니다. 예산의 집행이 당초 편성된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수정하여 집행합니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NPO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NPO의 결산은 실질적인 면에서 수입과 지출의 집행실적을 의미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작성을 말합니다.

나. NPO의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이라고 하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중심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에 의하며,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른 개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수지라고 하고,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손익이라고 합니다.

NPO의 수입이라고 하면 대개 출연금, 회비, 보조금, 기부금 등에 의한 현금의 유입을 말합니다. NPO의 지출은 목적사업에 따라 집행된 현금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지출의 근거가 되는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정관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되며, 그 범위의 해석은 엄격해야 합니다.

다. NPO의 회계와 세무

NPO의 회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PO가 적용받는 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등이 있고 해당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계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는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구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을 적절히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조직이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세법으로는 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는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부의 작성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계와 세무의 장부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장부를 기본으로 하여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장부의 작성은 갈음합니다.

2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

가. 정관상 목적사업

(1) 판단기준

비영리조직은 설립행위로서 정관작성 시에 반드시 목적사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행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주무관청이 인가한 목적사업을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2) NPO의 세무등록(고유번호증)

비영리조직은 설립 후 단체의 활동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⁴¹⁾ 실무적으로는 단체의 활동을 시작한다는 데 대한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발급 신청의 해태에 따른 자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41)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이 준용됩니다(2015.5.29).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시에는 고유번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부여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회계를 해야 합니다.

(가) 업종기준과 소득기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다음에서 기술한 업종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의할 것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1) 업종기준

사업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예시적 사항으로 규정의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⁴²⁾

2) 소득기준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의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①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②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③ 주식 등 양도소득
- ④ 고정자산 처분소득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업소득 수입에 사용한 고정자산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은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42) 법규법인 2012-168, 2012.5.30.(종교단체의 청소년육성사업), 법규법인 2010-364, 2010.12.21.(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참조.

- 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 및 제4호(영업권 등)에 따른 자산양도소득
- ⑥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에 한합니다.

(나) 참고사례

1) 계약 등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하고 해당 연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 등

비영리법인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 전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행사업의 경우 사업권한 자체가 국가 등에 있으므로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판례

수익사업으로 본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사업(대법 81누 266) ②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공익을 위한 의료비 감면이나 병원운영 자체가 종교사업의 수행함을 내세운 경우를 포함(대법 90누4327) ③ 학교법인의 건물임대업(대법 2000두3238) ④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대법 96두 14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대법 95누14435) ② 학교법인이 시설의 위탁관리인으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수령한 경우(대법 2004두9265) ③ 정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정책적 목적의 저리대출에 의해 획득한 이자수입(대법 2003두 12455)

(2) 수익사업 개시 신고(사업자등록증)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 전에 이미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이를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존 고유번호증의 번호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을 넘겨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여 미등록가산세 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3

NPO의 회계

비영리조직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외부에 보고함으로써, 기부자, 회원, 채권자,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예를 들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회계기준

(1)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등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⁴³⁾ 이 기준은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에 적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조직의 경우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⁴⁴⁾

(2)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⁴⁵⁾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가 적용되며, 간소화된 회계기준으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

상증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이 되는 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⁴⁶⁾ 이 기준은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와 동법 제50조의3에 의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7. 7. 20. 의결.

44)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이 적용됩니다.

4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개정한 회계기준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적용 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입니다.

46)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2017. 12. 7. 제정, 2018. 1. 1. 시행.

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1)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계산이 되도록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2)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현금주의에서는 수익은 현금이 회수 되었을 때 비용은 현금이 지급 되었을 때 이를 인식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의 입출금과 무관하게 수익은 각각의 수익인식시기를 따르고 비용은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 재무제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비영리조직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에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순자산은 제약 없는 순자산과 제약 있는 순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인 순자산에 대하여만 기술하고자 합니다.

(가) 제약 없는 순자산

기부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을 포함)나 법령에 의해 사용용도와 사용시점 또는 처분이 제약되지 않은 순자산을 말합니다. 제약 없는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 제약이 없는 수증, 또는 수익성자산의 투자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은 없지만 조직의 성격, 환경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약정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나) 제약 있는 순자산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이 제약된 순자산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제약 순자산과 영구제약 순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제약 순자산과 영구제약 순자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1) 일시제약 순자산

특정 비용을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특정 기간 보유하거나, 경제적 내용연수가 유한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그 내용연수에 걸쳐 보유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약이 소멸됩니다.

2) 영구제약 순자산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소멸될 수 없는 경우의 순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연도에 따른 일정 기간에 걸쳐 순자산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과 그 밖의 순자산 증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수익과 사업비용
- ② 사업 외 수익과 사업 외 비용
- ③ 순자산의 증가(감소)
 - 제약 없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 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3)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에 따른 일정 기간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금흐름표는 각 운영활동별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와 이로 인한 현금의 증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 재무상태에서 기말의 재무상태로 변동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운영활동별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에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인한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에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됩니다.

사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은 현금을 증가시키는 개별수입항목을 가산하고 현금을 감소시키는 개별지출항목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간접법은 운영성과표상의 순자산의 증가(감소)⁴⁷⁾으로부터 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고 사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금액을 가감하여 표시합니다. 직접법을 채택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된 현금흐름표를 주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조직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라 소실되는 정보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면 수지계산서로 현금흐름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주석

주석이란 재무제표 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중요한 정보

47) 제약없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사례8 참조.

를 제공하므로,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돋는 일반사항
- ②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 ③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기타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④ 관련 법규 등의 요구가 있는 사항⁴⁸⁾

위의 ①항에 해당하는 일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그 내용을 충분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조직의 개황, 주요 사업내용, 최근의 사업환경 변화(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 그 내용을 포함)
- 비영리조직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포함)
- 회계정책 및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그 밖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이고 적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구분경리

(1) 개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8)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이외에도 비영리조직의 설립근거법이나 관련 규칙 등에서 나름의 목적에 따라 구분경리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소득별로 그 귀속이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의 자산·부채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3) 손익의 구분경리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소득별로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결산 시에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 합니다. 이 때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며, 공통손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다만, 개별손금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합니다.

어떤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활동 간에 비용을 배분합니다.⁴⁹⁾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사업성격과 운영방법에 맞추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49)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는 NPO의 경우 해당 기준에서 사업비용과 사업 외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인력비용은 해당 인력이 각 활동별로 투입한 업무시간에 기초하여 배분합니다. 즉 급여 등 인건비는 제공된 근로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시설비용은 각 활동별로 관련되는 시설 면적이나 사용빈도를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면적과 사용빈도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다른 적절한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합니다.
- 기타비용은 각 활동별 인력비용이나 시설비용에 대체로 비례하는 항목들은 그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그 밖에는 다른 적절한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합니다.

한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보되, 동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⁵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합니다.⁵¹⁾

마. 비영리조직의 주요 회계처리⁵²⁾

(1) 기부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기부 받은 경우이거나 미술품 등 수집품을 기부 받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비영리조직은 기부를 받은 경우 운영성과표에 제약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제약이 기부를 받은 회계기간 내에 해제되는 경우

50) 국세청 예규, 법인22601-3867, 1981.10.20.

51)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개정 1993.02.01.

52)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는 NPO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추가적으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중급회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기부금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계 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회비수입이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입회한 경우 비영리조직에 제공하는 입회비수입과 회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기회비수입 등을 말합니다. 회비수입은 단체의 규정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비영리조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상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금액을 추정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익관련 보조금(비용을 보전하는 경우)과 자산관련 보조금(자산취득에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은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총액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법에 의해 정부보조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자산차감법에 의해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적 방식으로 계상하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의 경우 정부보조금에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합니다.

(3)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 해당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나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적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퇴직연금납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퇴직금충당부채의 차감적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미리 정해지며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질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모든 조직은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대내외 환경의 중대한 변화,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기존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이제껏 적용해온 회계적인 추정금액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계산상의 실수, 회계기준의 적용 오류, 사실판단의 오류, 부정·과실 또는 사실누락 등이 있습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되, 이중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순자산의 증감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NPO의 증여세 과세유예와 의무

수증자(또는 수혜자)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 됩니다.⁵³⁾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는 각종 의무가 부여됩니다.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2조).⁵⁴⁾

가. 공익법인의 과세유예

(1)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⁵⁵⁾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공익신탁을 통하여 출연한 경우를 포함)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법정 신고기한⁵⁶⁾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여기서 출연한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출연행위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말하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53)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NPO의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5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서 1장의 2. 나. 참조.

55) 상증법 제16조 제1항.

5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의 5%(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20%⁵⁷⁾)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의 보유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그 초과분의 주식가액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⁵⁸⁾

비영리조직이 재산을 출연(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 일반의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당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 의무⁵⁹⁾

(1)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3년 내 사용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은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57)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기준

- ① 10%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
- ② 20%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일 것
 - 주식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할 것
 -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으로 할 것

58) 상증법 제48조.

59) 상증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에 이를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 됩니다.⁶⁰⁾

실무적으로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급한 1인당 인건비가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⁶¹⁾

(나)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미달사용 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0)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과다인건비 규정을 준용하되, 2012.2.2.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성실공익법인은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운용소득을 기준금액⁶²⁾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의무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 받거나 출연재산(그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 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⁶³⁾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 지분 제외)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⁶⁴⁾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 가액의 30%(성실공익법인의 경우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성

62) 운용소득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이 사용의무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63) 다음의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64)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실공익법인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의무

(가)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의무

출연자나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이사 현원(현재 인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나)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 자기내부거래 시 의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의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라) 공의사업 수혜대상의 제한금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생지, 지연, 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의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의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 공익법인 등의 협력의무⁶⁵⁾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⁶⁶⁾

재산을 출연하는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 및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에는 다음의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②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⑤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
-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⑧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위하여 주무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실무적으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상증법 제51조)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및 그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

65)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인 전용계좌 사용, 공시, 회계감사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66) 상증법 제4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상증법 제50조)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연도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인 공익법인⁶⁷⁾은 과세기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의 운영내역 등을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4) 외부 회계감사제도(상증법 제50조 제3항)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⁶⁸⁾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 과세기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⁶⁹⁾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종교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학교법인 등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7) 2014.2.2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68) 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69)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미이행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5%→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50%)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2007.12.31. 개정).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상증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개설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종교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상증법 제50조의3)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시대상 결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④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등 처분사항
- 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7)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준수(상증법 제50조의4)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⁷⁰⁾과 회계감사이행의무 적용대상인 공익법인⁷¹⁾은 외부회계감사이행 의무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8)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제출의무(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⁷²⁾

과세자료는 거래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무로, 수의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그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0)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상증법 제50조의3).

7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상증법 제50조 제3항).

7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9조;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5

NPO의 납세의무

가. 부가가치세

(1) 과세요건

(가)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② 사업상(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

(나) 과세대상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그러나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금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2) 간주공급

가)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소유로 변경되어 타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없으며, 관련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개인적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로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재화의 공급의제라고도 합니다.

나) 용역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영세율의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공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text{매출세액} = \text{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세표준)} \times 10\%(\text{영세율의 경우 } 0\%) - \text{대손세액}$$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매출세액} - \text{공제세액(매입세액공제 등)} - \text{예정납부세액(또는 미환급세액)}$$

(라)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1기는 1월 1일~6월 30일,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이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차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된 신고납부기한은 각 분기의 다음달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분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거나 또는 사회·문화·공익 및 정책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6조)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 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식용 중 일부)
 - 수돗물·연탄·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일부 제외)
 -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방송
 - 우표·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담배(일부)
 - 금융보험용역, 주택(부수토지 포함)임대용역, 토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단체가 공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종교·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 국가조직 등에 기증되는 재화
 - 박람회·전시품·품평회·영화제 등의 행사출품용으로 무상수입하는 재화
 - 조약·국제관습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6조에 규정된 내용 중 비영리조직과 관련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학교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③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부칙 제36조).

(3)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의무

(가) 일반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과세자료로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5년간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과세대항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를 면제하는 업종으로 간이과세자,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사업자,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탕업, 입장권 발행사업, 부동산중개업, 가사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그 밖의 소비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33조, 동법 시행령 71조).

나. 법인세

(1) 과세요건

(가) 납세의무자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나) 과세대상

1) 각 사업연도 소득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서상의 당기손익에 출발하여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되며, 세법상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결산조정은 결산서상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은 세무조정의 과정을 통해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특정손금항목에 대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당기에 비용처리를 못한 경우 차기 이후에 결산서에 비용계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기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며 차기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부동산투기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과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일반법인세 이외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⁷³⁾

$$\text{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등}) \times \text{세율}^{74)}$$

7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선택이 가능합니다.

7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3) 청산소득

비영리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것이므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따라 해산 시 보유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⁷⁵⁾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가) 이월결손금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며, 이월결손금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만 차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은 10년으로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나)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미공제된 잔액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비과세소득으로는 법인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신탁⁷⁶⁾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자산	세율		
	2009.3.16.~2012.12.31. 양도자산	2013.1.1.~12.31. 양도자산	2014.1.1~ 양도자산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부동산	10%	30% (미등기 40%)	10% (미등기 40%)
투기지역 외의 주택	비과세		
투기지역 외의 비사업용 토지	비과세		

75) 상증법 제48조 제2항 6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1호.

소득이 해당됩니다.

2) 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때 법인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⁷⁷⁾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과세표준 - 2억 원) × 20%
200억 원 초과	39억8천만 원 + (과세표준 - 200억 원) × 22%

나) 총 부담세액

총 부담세액은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총 세액을 말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함으로써 총 부담세액을 구합니다.

(라) 신고 및 납부

1) 확정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는 총 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분납(분할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6)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목적의 신탁을 말합니다.

77)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 ② 세무조정계산서⁷⁸⁾
-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 등

2)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대상자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에 의한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입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세무상 비용)에 산입하여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적인 조세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 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7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가) 설정대상법인

1) 비영리내국법인

법인등기된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 과세법인(조특법 제72조 제1항), 청산중인 비영리법인,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제62조)은 설정대상법인에서 제외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③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나) 손금산입 한도액

①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복지 사업 용자금의 이자소득,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⁷⁹⁾

$$\text{손금산입 한도액}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times 100\% + \text{기타의 수익사업소득} \times 50\%(또는 80\%)$$

②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례⁸⁰⁾

-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수가 3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으로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특례(조특법 제74조 제4항)

79) 장학재단에 대한 설정비율 특례(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8호).

80) 조특법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내에 이를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손금을 구분계산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안분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통자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라) 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세무상 수익)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 ① 해산한 때
- ② 고유목적사업을 폐지한 때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조기환입한 때

위 ④의 경우 미사용 준비금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마)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장부에 직접반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3) 과세 특례

(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법인세법 제62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신고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22601-316 8, 1989.8.26).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과세표준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비영리법인은 법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 소득지급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이로써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다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비영리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법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대응 경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법인세법 제62조의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 자산

-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작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begin{aligned} \text{양도소득과세표준}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기타필요경비}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 \\ \text{납부할 세액} &= \text{양도소득과세표준} \times \text{양도소득세율} \end{aligned}$$

3) 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 의한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4) 지정지역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

지정지역의 주택·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위의 신고와는 별도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됨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의 적용 배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중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조업, 부동산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속적으로 채권 등을 매매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을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다. 소득세 원천징수

NPO의 임직원이나 타인에게 급여, 강사료, 사례비 등 소득을 지급하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득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내국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4%입니다.⁸¹⁾

(나) 근로소득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은 대부분 근로 소득에 속하지만, 사용목적이나 대상자별 사용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분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 원)를 뺀 금액에 6%를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일당} - 100,000) \times 6\% \times (1 - 55\%)$$

(다) 사업소득

비영리조직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① 지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② 대상소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소득자: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8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1호, 동법 제129조 제1항 2호;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라) 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강연료나 자문료 등의 대가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 법률에서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⁸²⁾

[참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소득자기준이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소득분류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을 적절하게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②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성: 사업자에게 종속, 고용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속·반복성: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속·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예, 사업자등록 신청은 한 경우).
 -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인적 용역을 제공했어도 사업성을 띠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우연히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82)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당초 80%였으나, 2018.4.1.부터 70%로 변경되었고, 2019.1.1.부터는 60%로 조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이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⁸³⁾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세법 128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1월~6월의 경우 7월 10일까지, 7월~12월의 경우 익년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6조). 소득세 신고납부 시 소득별로 일정금액 미만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라. 기타

(1)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⁸⁴⁾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업종기준),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기준(규모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83)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당초 250,000원이었으나, 2018.4.1.부터 166,666원으로 변경되었고, 2019.1.1.부터는 12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84) 세법상 혜택으로는 접대비 한도액, 결손금 소급공제, 외상매출금 대손요건, 세액의 분납기간 등에서의 우대가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이 가능합니다(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팀-391, 2006.02.21).

(2)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특정사업소득⁸⁵⁾,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 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관청의 징세비의 절감과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다음 연도 2월분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⁸⁶⁾

6

NPO 관련 조세 특례

가. 양도소득세 특례

(1)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조특법 제83조)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사립과학관(이하 박물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85)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86)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말합니다.

(2)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제85조의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 직장어린이집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의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법인세 특례

(1)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의 적용배제(조특법 138조)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됩니다.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 지방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비영리단체과 관련된 조세 특례는 대상과 세목이 복잡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해당 조문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조세 특례의 경우 일몰시한과 면제비율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의 표는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지방세 특례 조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칸에 일몰시한이 표시된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예시적이고 개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항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⁸⁷⁾	주민세	지역지원 시설세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2021.12.31		2021.12.31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20.12.31		2020.12.31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20.12.31		2020.12.31		2020.12.31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020.12.31		2020.12.31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2019.12.31	2019.12.31	2019.12.31	2019.12.31	2019.12.31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021.12.31		2021.12.31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2021.12.31	2021.12.31	2021.12.31	2021.12.31	2021.12.31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2021.12.31		2021.12.31	2021.12.31	2021.12.31
제43조	평생 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2021.12.31		2019.12.31		
제44조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2019.12.31		2019.12.31		2019.12.31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2019.12.31		2019.12.31		2019.12.31
제45조	학술 연구 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2019.12.31		2019.12.31		2019.12.31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일몰없음	일몰없음	일몰없음	일몰없음	일몰없음
제52조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2019.12.31		2019.12.31		2019.12.31

87) 주민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을 참고하되, 감면대상 법인이 해당 시설 등의 인가, 등록, 신고, 보고 등 요건이 만족된 감면대상인지,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 일몰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등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특례

(1) 비과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특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됩니다(종부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종부세법 제6조 제3항).

(2) 종교단체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 단체가 속하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부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봅니다.

개별단체가 종부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교단체는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8.
-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세무, 2018.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2018. 1. 1. 시행.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 2017. 7. 20. 의결.
- 중소기업중앙회, 알기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회계기준(안내서), 2013.
- 김준석,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2013.
- 이의경·신승묘, 한권에 담은 회계·세무·재무, 신론사, 2014.

제4장

NPO의 모금과 기부금품법

제4장

NPO의 모금과 기부금품법

1

기부금품법88)

가. 기부금품의 개념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나.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는 사례

(1) 반대급부가 있는 금전이나 물품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크라우드 펀딩, 자선 바자회, 일일찻집 등에서와 같이 통상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⁸⁹⁾ 반대급부가 제공되어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에 수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이익이 적거나 1회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⁹⁰⁾

88) 정식법명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 ‘기부금품법’으로 약칭합니다.

89)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12면 참조.

Q. 비영리단체가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할까요?

해당 수공예품에 대하여 통상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집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언 해석상 금전이나 물품이 아닌 경우

그 외에 주식의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언상 포함되지 않으며, 물품이란 동산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역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288 판결).

(3)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는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에 따른 금품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2.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4.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90)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이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이와 같은 모금활동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 조성을 위해 금전을 각출하는 행위는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피각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한 금품을 각출한 것이므로 피각출자에게 재산권 및 생활안정의 침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대법원 82도2584 판결).

〈참고판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고자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례에서 “이는 위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사람들과 피거출자들 사이에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객체의 구별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위 기부금품을 거출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부금품모집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함(대법원 90도870 판결).

위 조항에 규정된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1) 조직·구조·운영에 있어서 그 구성원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정도 단체 독자의 활동을 영위하고,
- (2) 단체의 설립목적·조직·운영 및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 (3)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도8118 판결).

〈참고판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들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2008. 9. 9.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모금을 독려하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 2 명의 농협 계좌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총 2,269회에 걸쳐 합계 75,755,363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안티2MB의

의사 결정 체계, 사회적 활동 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추어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므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각 목의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 1, 피고인 2가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모금을 전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모금액 중 안티2MB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의 점 중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 모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도8118 판결).

Q. 비영리단체가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경우 기부금품 등록을 해야 할까요?

판례는 환경단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도5954 판결).

다.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는 크게 (1) 모집 등록, (2) 모집 및 변경 신청, (3) 모집결과 보고, (4) 기부금품의 사용, (5) 사용완료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별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1천만 원 미만을 모집 목표액을 하여 등록 없이 모금하였다가 실제 모집액이 1천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며, 실 모집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⁹¹⁾

(1) 등록 대상 모집행위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 다만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모집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회복지시설에 연말 또는 명절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위문금품의 경우에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보내는 위문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⁹²⁾

(2) 모집 기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모집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단체가 기부금품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안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을 제외한 액수가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도5954 판결).

91)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12면 참조.

92)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3면 참조.

(3) 등록 대상 사업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 국제적 구제사업(예: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자원, 동남아 쓰나미 이재민지원 등)
-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자연재해는 제외 : 재해구호법에 따라 별도)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참고로 건물 매입 등 자산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 등록 반려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청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2년 안에 모집된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내부 지침은 없으나 부처 해석상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비영리단체가 운영권만 갖는 조건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⁹³⁾

93) 박혜연 기자, 「더나은미래」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 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조선일보, 2018. 9. 18. 기사 참조.

〈참고판례〉

판례는 국제적 구제사업에 북한 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필요한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도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9두3690 판결).

(4) 등록청(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모집목표금액	등록청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모집자의 주소지(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4조 제2항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0억 원 초과	행정안전부 장관

(5) 등록 제외 대상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택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기부금품법 제3조).

(6)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모집자의 의뢰에 의

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기탁 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제2항).

〈참고판례〉

판례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있다고 하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결코 허용되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9331 판결).

(7) 제출서류

모집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하와 같으며, 자세한 서식 등 관련 정보는 1365 기부포털 사이트(<https://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⁹⁴⁾

- ①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 ② 기부금품모집계획서
- ③ 기부금품사용계획서
- ④ 정관, 당현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한함)
- ⑤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94) 1365 기부포털 > 기부활동가이드> 기부업무가이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절차 확인

라. 기부금품의 모집

(1) 모집자 표시, 출연 강요 금지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기부금품법 제6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 접수 방법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제1항).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3) 모집비용의 총당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3조, 시행령 별표 1).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집금액	적용비율
1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200억 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Q.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에는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⁹⁵⁾

(4) 모집 등록 변경

모집 기간의 연장, 목표액 증액 등 등록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모집 기간 연장을 등록된 모집 기간 만료 이전에 가능하며, 목표액 증액은 등록된 모집 목표액 도달 이전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목표액을 초과 모집한 경우 미등록 기부금 품 모집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모집 결과보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기부금품 모집 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항).

95)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9면 참조.

마. 기부금품의 사용

(1) 목적 외 사용 금지

모집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법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2)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1항). 또한 모집자는 기부금품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그리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 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3) 사용완료보고

기부금품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기한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지출증빙서류, 모집 및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증명자료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 기부금품법 개정안

현행 기부금품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 참여를 어렵게 하여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다수 있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기부금품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 등을 추가하고, 등록 대상 기부금품의 금액을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사전 등록 원칙을 완화하여 사후 등록의 예외를 인정하고, 모집 총당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형별과 양별규정을 삭제하고 형별에 규정된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안(이재정 의원안, 2017. 7. 12. 발의, 의안 번호 2007953)이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 기부금단체 지정의 의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기부금을 통해 세금부담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기부받는 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이거나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합니다.

한편, 기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단체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통해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아 지위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서류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혹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③ 고유번호증
④ 정관	④ 단체 회칙(정관)
⑤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⑤ 전년도 수입내역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법인 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⑥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⑦ 전년도 단체 명의 통장내역 사본

나. 지정기부금단체

(1) 지정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 조항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은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지정기부금단체는 이러한 의무이행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⁹⁶⁾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5.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6.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7.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참고로, 2019. 1. 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⁹⁷⁾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⁹⁸⁾’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지정취소사유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⁹⁹⁾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해산한 경우

96) 1.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97)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98)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 3항, 시행령 43조 3항)

99) 2019. 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위 조항 개정내용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사유로 상속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사유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의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항, 제11항).

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1)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한정됩니다.

- 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할 것(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함)¹⁰⁰⁾

¹⁰⁰⁾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가 추가되었습니다.

-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 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은 반기마다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지정기부금단체와 달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2)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제5항).

(3) 지정취소사유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

100) 위 조항의 '수입' 개념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하여 개인기부금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하급심 판결은 그러한 사업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하여 개인기부금 비율을 산정하여야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80950 판결). 다만 위 판결은 2018. 12. 현재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된 단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3 기부 관련 세제혜택

가. 법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세법은 기부금이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고 보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되,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times 100분의 50$$

지정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한도 내의 법정기부금과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3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times 100분의 10$$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이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나.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고 보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되,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101)과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 × 100분의 30

(2)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¹⁰²⁾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 × 100분의 10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101) 필요경비에 산입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102)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76조, 제88조의4 제13항).

다.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 평가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자 외로부터 기부받은 자산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부한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개인 기부자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인식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기부가액을 결정하고 그 외 기부금의 경우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기부가액을 결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하여 결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다만 일부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에 의하여 기부가액을 결정합니다.

Q. 개인의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소액자산의 경우 실무상 시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에는 현물기부 시 시가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은 시가의 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국세청 예규 소득세과-429, 2011.5.24. 참조). 따라서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동산 등 소액자산의 경우 시가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기부금단체가 자체적으로 시가평가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현물기부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감가상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영수증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재능 기부자에 대하여 용역가액만큼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등 참조), 재능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박훈,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사례 분석”, 2017년 기획연구보고서 시리즈 10,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7, 9-64.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제5장

NPO의 노동관계

제5장

NPO의 노동관계

1

NPO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

가. 들어가며

비영리단체에서 노동관계는 낯선 측면도 있습니다. 공익의 증진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평등한 모임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일견 수직적·대립적인 구도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인 이상,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영리단체 역시 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NPO의 노동관계를 다루는 본 장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노동관계를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뒤, 모집·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단계별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살펴보고,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둘러싼 노동법적 쟁점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1) 일반론

비영리단체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의미는 노무제공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이 정신노동인지 육체노동인지 가리지 않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3호), 사용·일용·임시직·촉탁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단시간 근로)·계약직 등 고용형태나 고용기간도 불문한다는 뜻입니다.¹⁰³⁾ 즉 누군가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의미에서의 “사업”이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를 의미합니다.¹⁰⁴⁾

어떤 단체가 사무실과 비품을 갖추고 인력을 결합하여 특정 사회적 활동을 “업(業)으로서 계속성”있게 가져가는 이상, 해당 단체의 활동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앞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다고 했듯, 사업체가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사업체인지 상관없고, 사기업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국영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도 근로기준법의 사업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활동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단체의

103) 민변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여림출판, 2014, 8면.

104) 이병태, *최신노동법(제9전정판)*, 중앙경제, 2008, 547면.

활동가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필요가 없고, 사회사업이나 종교사업 등 비영리사업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78다591 판결). 또한 비영리단체에도 근로기준법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적용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누8851 판결).¹⁰⁵⁾

(2) 5인 미만 단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가)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조항만 적용됩니다. 항상 정해진 인력이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단체 사정상 인력과 출근 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단체에서 법 적용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 적용사유가 발생하는 날’이란 가령 휴업수당 지급이나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위해 그 산정이 필요한 날을 말합니다. 해당일로부터 이전 1개월 동안이 상시 근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산정기간 1개월 중에 1/2 이상을 5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동거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이 필요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 동안 매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105)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6. 7. 2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업 알선을 통한 중간착취는 배제되므로 허가를 얻지 않은 채 파견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제9조, 제10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등 공적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규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며, 이 중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며,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예외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임금대장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번호
3. 고용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9. 기본급·수당·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임금을 공제한 경우 그 금액

한편 해고로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동 의무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다만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함께 생리휴가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출산 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위 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되며 다만 18세 미만자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고 해당 교육을 미실시하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제39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의

무가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로 만들어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로 두고 있고 미실시하는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86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 100분의 5 범위에서 의무고용률¹⁰⁶⁾에 따른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동시에 전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사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이외에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제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른 퇴직연금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안전 교육 필수 실시 사업장에 의무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 이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으나,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사항으로서,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가입한 연금제도에 따라 내용이 다르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106)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0.031%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¹⁰⁷⁾

내용	상시근로자수			비고
	1~4인	5~9인	10인이상	
균등한 처우	○	○	○	제6조
강제근로금지	○	○	○	제7조
중간착취 배제	○	○	○	제9조
공민권 행사 보장	○	○	○	제10조
근로조건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	○	제17조
임금대장 작성	○	○	○	제48조
휴게시간·주휴일	○	○	○	제54조,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휴가제	×	○	○	제56조, 제57조
해고 등의 제한	×	○	○	제23조
해고사유 서면통지	×	○	○	제27조
해고예고(수당)	○	○	○	제26조
연차·생리휴가	×	○	○	제60조, 제73조
출산휴가	○	○	○	제74조
미성년자·임산부의 야간근로 제한	○	○	○	제70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	×	○	제93조
주40시간제	×	○	○	제50조
성희롱 예방 교육	계시·배포	계시·배포	○	고평법 제13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계시·배포	계시·배포	계시·배포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사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퇴직연금제도 교육	○	○	○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107)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7면) 및 서울시NPO지원센터, 2016년 NPO운영길라잡이(7면)에서 재구성.

다. 비영리단체의 사용자

앞서 보았듯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단 혹은 재단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와 같이 해당 단체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등기임원(이사, 감사 등)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그 준수 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97도813 판결, 2007도4904 판결 등).

임원진이 단체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 임원이 대표이사와 함께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면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상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도2151 판결).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무보수로 대표를 보좌하는 임원은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77도3528 판결). 또한 대표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한 바 있는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83도2272 판결).

결국 비영리단체에 있어 사용자 책임은 사단 혹은 재단법인 그 자체가 지는 것이고 해당 단체의 대표가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 해당 대표 역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등기 임원도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없고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노동법상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문제

(1) 자원활동과 열정페이의 경계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2000년대 초반 청년실업 문제의 대책으로 인턴제도가 지목된 이래 무급인턴제도는 사회 각 영역에 폭넓게 확대되었고, 현재 다수의 비영리단체들에서도 인턴 또는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라는 명칭으로 영리법인의 인턴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또 다른 열정페이에 다름 아닐 것이며,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을 지니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들로서는 인턴 또는 자원봉사제도의 윤리적·법률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원활동과 근로관계의 법적 구분

법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근로계약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그 핵심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사용종속관계의 표지를 크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는지 여부 등), ②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의 소유관계나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대행이 있는지 등), ③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를 종합하여 근로관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구성요소로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해 사용종속관계의 표지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활동(노동)이 행해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정액의 금품이 제공된 관계에서 노무 제공자가 금품 수령을 목적으로 당해 활동에 종사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들(노무제공자와 수령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나301869 판결).¹⁰⁸⁾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청에서 모집하여 등·하교 및 교통안전지도, 학교 내·외 순찰,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 교육청에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정한 활동(노동) 제공이 금품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활동(노동) 제공자가 금품수령을 목적으로 활동(노동)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활동자(노동 제공자)가 당해 활동으로 이루어질 공익의 달성을 및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통한 내적 성취감 및 만족감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활동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상대방은 활동자의 어떤 의사를 기대하였는지, 일정액의 금품이 지급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활동(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108) 위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2015. 12. 2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품의 액수가 당해 활동(노동)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액수인지, 당해 활동을 통하여 이룩되는 성과가 공익과 관련된 것인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로 강한 지휘감독관계에 놓 이게 되는지, 당해 활동관계에서 이탈이 자유로운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의무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로 표시된 관계에서 책정된 금품의 액수는 시장가치에 상응할 리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수준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법원의 첫 번째 표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기준이라 비판받을 여지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활동관계에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무 제공에 관련된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사실 비영리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나의 노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관념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이 같은 관념이 근로자 집단 내부의 합의에 따른 일종의 혜계모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주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저임금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종속관계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법률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연방 노동부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에서 규정하는 다음 6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턴에게 고용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① 인턴과정이 고용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교육적 여건 아래에서 행해지는 교육과정과 유사해야 한다.
- ② 인턴제도를 통한 경험은 해당 인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③ 인턴의 업무가 정규직원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인턴은 정규직원의 관리감독하에 근로해야 한다.
- ④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인턴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턴제도로 인해 해당 기관의 사업이 때때로 지연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 ⑤ 인턴제도 종료 후에 자동적으로 고용되는 자격이 인턴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 ⑥ 고용주와 인턴은 인턴기간 동안 인턴에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인턴 또는 자원봉사제도가 실질적 근로와 구별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 스스로 해당 제도가 암묵적 지휘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제도가 지닌 교육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을 지닌 비영리단체로서는 단체가 운용하는 자원활동 역시 그 자체가 지닌 공익적 효과와 함께 해당 자원활동가의 성장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해 점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영리단체의 인턴 또는 자원봉사제도는 윤리적·법률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례 소개

비영리단체 A는 인턴제도를 운영해오다 무급인턴제의 문제의식을 느낀 후 ‘자원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에서도 기존의 업무 보조적 성격을 모두 배제하고 지원자들의 관심사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영역인 웹디자인이나 홍보 관련 분야에서는 자원활동가를 선발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선발방식도 변경하였는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한 선발형태였던 인턴제도에서 최소한의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만을 작성하여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여 지원자들의 부담을 덜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선발방식은 자원활동의 의의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활동가의 급여에 관하여는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주 2회 전일 출근을 강제하던 방식에서 1.5일을 자유롭게 출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지원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업무 보조적 성격에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자원활동의 성격을 변경할 때 자원활동가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보조의 성격임을 지원자와 단체 양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 최소한 이것만은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

비영리단체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단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적인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규정, 연차휴가 규정들이 잘 제시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약예정을 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별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제114조).¹⁰⁹⁾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될 때 법적으로 작성의무 및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에 모두 담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망라하여 정리해두는 문서로서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집단적·통일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작성의무가 배제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 및 비치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의 근로

109)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배상책임각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1997. 10. 29. 선고 97나18136 판결 등 참조.

조건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비교·검토할 수 있게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로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4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의견을 듣는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과 개정 이유 등을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뒤,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가운데 반드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2007도1939 판결 등).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¹¹⁰⁾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들과 설명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단체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해 둔다면 노·사 양자가 예측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go.kr/>)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취업규칙’을 쳐서 확인하면 됩니다.

2

NPO 노동관계의 단계별 쟁점

가. 모집·채용단계

(1) 채용 관련 서류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작성·보관의무

모집·채용단계에서 비영리단체는 지원자들의 연락처와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등 특기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이력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채용 직종에 맞는 활동계획서나 포트폴리오, 특기, 활동, 직무교육 훈련 내용, 연구실적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직무수행에 관계없이 나이, 종교, 학력, 신분, 출신지역, 장애, 남녀구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채용 관련 서류들의 반환의무에 대해 본다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직자(지원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법률에 따라 구인자(비영리단체)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된 14일 이후부터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인자는 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모든 구직자들의 채용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서류들은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전자서류 방식의 채용이 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을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 방법과 임금계산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서 등이 ‘중요 서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이러한 서류들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수습 근로자

비영리단체에서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적응을 위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고 복리후생 등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본 채용 거절 통보가 없는 이상 해당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수습기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의 인사규정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309 판결). 또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97나18136 판결). 법정 수습기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므로 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적용제외와 최저임금액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실무적으로도 통상 3개월 미만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3)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영리단체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소규모 비영리단체로서 특정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경우나 업무집중 시간대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유용합니다.

이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을 경우 1일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 시간은 4주 동안 해당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주5일 근무자x4주=2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제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text{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text{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 \text{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times \text{시급}$$

나. 고용유지단계

(1) 법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한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따질 때 휴게시간은 제외되는데,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자가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거나 상담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식이나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다243078, 2016다243085 판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교육, 연수, 행사, 워크숍 등의 참석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개별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정근로 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하여 통상 주휴일로 사용되는 토, 일요일에 행사가 많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행사가 예정된 주휴일은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하도록 한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특정일로 대체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유를 밝히면서 근로자에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로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수면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연장근로·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가령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하는데, 보상휴가제의 조건 및 내용은 각 단체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에 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비영리단체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단체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3)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해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채용 1년 차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차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연차와 구분하여 월차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법정용어는 연차휴가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차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의 연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연가가 생겨나는 대신, 이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가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신규입사자는 최초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6월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차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에 더하여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현재 신규입사자에게는 최초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해에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입사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6년차에 17일, 8년차에 18일이 발생하는 등 매 2년마다 하루 씩의 연차휴가가 더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로부터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일만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연차휴가수당, 또는 연가수당이라 표현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라 하는데 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1조).

1. 사용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
2. 근로자가 서면 요구를 받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3.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으로서 앞서 살펴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일정한 지급 주기의 존재),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고정적(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해 다른 조건 없이 지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국한되지 않으며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적 식대, 정기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이나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명절보너스·여름 휴가비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등을 하여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가령 명절보너스나 경영성과금도 포함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차량 유지비와 같이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금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각각 적용되는 법정수당 및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	구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업재해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감급제재의 제한

(5) 이른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이 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근본 원칙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특성에 더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임금지급 방식인 점을 근거로 볼 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많은 사업장, 특히 5인 이상이지만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계산상의 편의성이나 초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게 채택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로 법정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의 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는 요건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물리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라거나 계산상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라는 요건에 대해 본다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식만 제시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를 인식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근로자가 아무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포괄임금 제의 편법적 남용을 방지하고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가 법적 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6) 4대 보험 및 사업주 지원제도

여유가 있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중식비나 교통비의 지급,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지원, 지자체 등의 휴양시설 할인 지원 등을 복리후생제도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복리후생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후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처리 시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사전 공제 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미지급 보험료를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령 180일 이상 재직하였고 비자발적 퇴직이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관하여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7) 징계

징계란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나 기업질서 위반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성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부당징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수위가 비례하는지 그 양정의 적절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징계사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나아가 해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대해에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한 사유라 판단하고 있어,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정당한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비영리단체에서도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비위사실의 발생 → 진상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 등의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
→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심의 통보 → 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 → 징계결과 및 이의신청 기간 통보 → 이의신청 및 재심 여부 결정 → 재심 결정 → 징계집행

(8)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

여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은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주 의무는 규모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¹¹¹⁾

	내용	처벌 조항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모두 해당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의 즉각 조치 사항	사실확인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불이익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희롱 가해자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실행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10인 이하 사업장은 게시·배포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편 고객 등이 근로자를 성희롱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의 활동가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노동관계의 종료단계

(1) 근로계약의 해지 및 퇴직절차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문서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위해 소정의 사직서 양식을 마련해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

111)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55면)에서 재구성.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앞서 보았듯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염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없는 이상 합의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징계 해고로 해석됩니다. 사유와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반해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노동법적 해석으로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민법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거나 수락하지 않더라도,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것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로자의 이직행위를 불법행위라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이른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자발적 퇴사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 사직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금지기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의 예고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부과되는 의무이나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불가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2. 출산 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3. 육아휴직기간

(3) 경력증명서 발급의무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떼어 달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실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사실증명서에는 업무종류, 근무기간, 지위,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퇴직금 정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비영리단체라면 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일이 많았으나,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따라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 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이 필요한 경우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고,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5. 기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minwon.moel.go.kr	1350
고용보험	minwon.moel.go.kr	1350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02-6021-1000
중소기업진흥공단	hp.sbc.or.kr	13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02-2670-91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inochong.org	02-6277-0000
서울시NPO지원센터	www.snpo.kr	02-734-1109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or.kr	02-376-0001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	02-335-0101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인사관리 실무기법, 2010.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박영사, 2010.
- 민변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여림출판, 2014.
-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 2018.
- 서울시NPO지원센터, NPO운영길라잡이, 2016.
- 아산나눔재단, 비영리단체 설립·운영 관련 법률 매뉴얼, 2018.
- 이병태, 최신노동법(제9전정판), 중앙경제, 2008.

제6장

NPO와 지적재산권

제6장

NPO와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조감

지적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신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NPO와 관련 있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중 일부를 다를 예정입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2

저작권 일반112)

가.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구분됩니다.¹¹²⁾

나. 저작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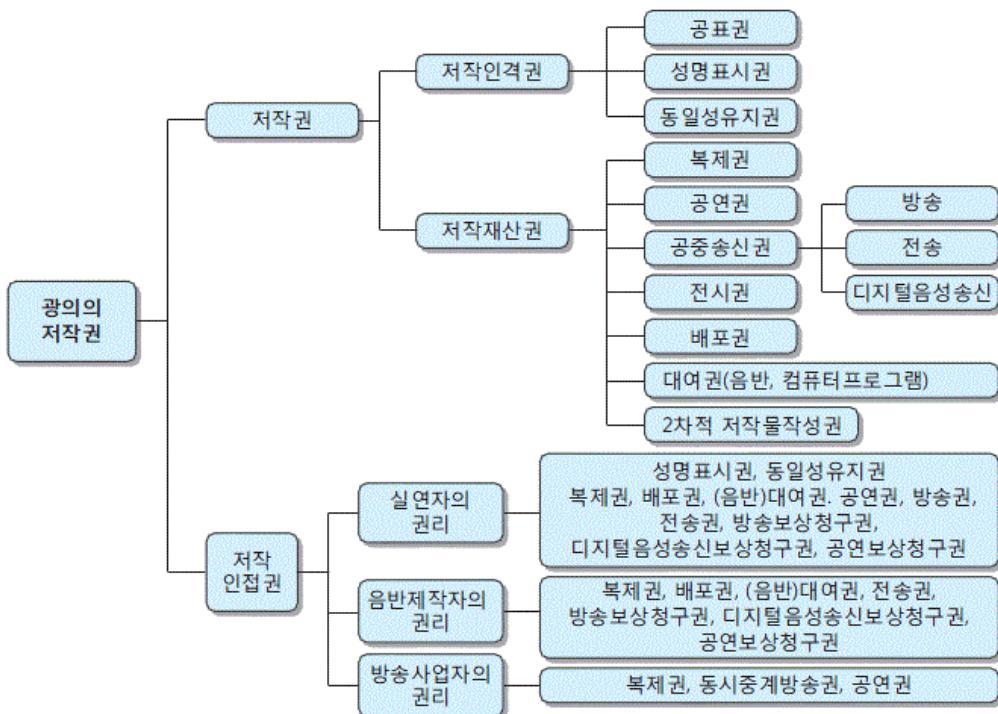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12) 이규홍 외 3인 공저, 저작권과 침해, 2016.

113)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3.jsp

저작재산권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그 저작자가 자신임을 표시하고, 또 저작물을 창작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접권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4조의2 참조).

〈광의의 저작권 구분〉¹¹⁴⁾



1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저작인접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4&cciNo=1&cnpClsNo=1>

3 NPO 저작권 분쟁 주요 사례로 대비하는 저작권 실무

가. 폰트 프로그램 사례로 이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과 사용

(사례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영리목적으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폰트를 NPO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데 폰트 프로그램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를 통보하고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 진행된 사례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조감

(가) 컴퓨터프로그램(프로그램) 저작물의 정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권리 – “복제권”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폰트 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복제란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사건에서 복제권이 주로 문제되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주요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실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2) 저작권 침해와 계약 조항의 위반(채무불이행)의 구분

(가) 저작권 침해와 채무불이행의 차이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양벌 규정 있음)이 되며, 단순히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내용(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 이용(복제)과 사용(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을 구분하여 판단

■ 컴퓨터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다1017 판결).

사례1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프로그램 복제 시에는 이용허락을 받았고 추후 사용방법 및 조건의 위반이 일어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저작권 침해대응 실무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1) 저작권 침해 여부인지 검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블로그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복제한 경우)인지 비영리 무상이용 조건 등으로 저작권자가 전송한 설치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허락은 받았으나 계약 조건의 위반 여부만 문제되는 채무불이행 사건인지를 살핍니다.

2)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프로그램 복제(설치) 시점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른바 클릭온 방식으로 동의버튼을 눌러 설치)라면 설사 복제 이후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채무불이행 여부만 문제됩니다. NPO 활동가 개인에 의한 복제(설치) 및 실행은 이용약관상 비영리 무상이용 조건을 충족하여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영리 무상이용 조건은 단체가 아닌 개인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NPO의 구성원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이용약관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소개할 공정이용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피고, 형사소송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고의”성 유무를 중심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게 되는데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조항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¹¹⁵⁾

115)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강신하(2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진 저작물 판례로 보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2) 비영리단체 실무자가 자기단체 블로그 글에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사진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삽입하였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1) 공정이용의 이해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권리 보호와의 균형 속에서 일반 공중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공정이용이 인정된 주요 사례 -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

(가) 사실관계 : 사례2의 실제 사실관계를 소개하며 아래 법원의 판단도 소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식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에서 촬영한 “광어회” 사진이 문제되었다. 피고 NPO 단체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한 시사 보도 목적의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구글 검색을 통해 광어회 섬네일(thumbnail)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이 광어회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법인이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을 거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3407 판결, 원고 항소포기로 확정)

- ①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인 광어회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인 점,
- ② 그 결과 촬영자의 사진기술이 주로 이용되었을 뿐 개성과 창조성의 개입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저작권 등록 또는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진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 ③ 피고는 채식을 장려하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던 중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한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화질이 축소된 이미지를 채식의 사례로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④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⑤ 원고의 이 사건 사진 등 음식물사진의 주요 고객은 광고업체 또는 음식점 경영자 등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축소된 이 사건 사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진의 시장가치 또는 피고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진 이용은 식생활에 관한 비평적 기사 작성을 위한 것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저작권 침해대응 실무 –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문제되는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 향상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이용 조항은 이를 방증합니다. 저작자에 의해 부당하게 저작권이 남용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제4호를 해당 저작물의 “시장가치 또는 저작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는바, NPO의 설립목적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이용 조항이 NPO는 저작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면책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다음 절에서 소개하는 저작권 이용 방법을 숙지하길 권장하며, 공정이용 등 저작자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가. 뉴스 저작물(어문 저작물, 텍스트)의 이용

NPO 활동과 관련된 뉴스 저작물을 NPO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뉴스 저작물의 링크나 일부 발췌가 아닌 전문을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이용가이드북>(2018)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뉴스 저작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이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뉴스 저작물의 정의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어 이용 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뉴스기사 중 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뉴스 저작물의 이용

(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경우

- 1) 소속기관의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기사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2)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뉴스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3) 그 외의 경우라면 제목과 주요 내용(3줄 이내) 및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참고판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다77405 판결, 2009다80637 판결 등).

(나) 뉴스 저작물(어문 저작물) 이용허락

(가)에서 소개한 경우 외에 예컨대 뉴스 저작물의 전문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 뉴스 저작물 이용 관련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용대가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어문(텍스트) 저작물 예컨대 블로그 글의 경우에도 단순 인용을 넘어서서 전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인 작성자에게 명시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사진 저작물의 이용

앞서 소개해드린 이른바 광여회사진 사건에서처럼 NPO가 작성하는 온라인 컨텐츠에서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사진 저작물 이용 방법을 요약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각주의 서울시NPO지원센터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외 검색엔진에서 사진 저작물 이용조건을 필터링하는 방법¹¹⁶⁾

(가)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창에 1) 원하는 저작물 키워드를 검색 후 2) 이미지만 검색해 줄 수 있도록 상단 조건에 이미지 템을 누르면, 이미지 검색의 상세 조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CCL¹¹⁷⁾ 전체를 누르면 조건에 맞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다음 www.daum.net

다음은 상세조건 란에 CCL 규정(이하 장을 바꾸어 설명할 예정입니다)의 6가지 이용 조건에 맞게 검색조건이 지정되어 있어서 네이버보다 조금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구글 www.google.co.kr

구글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구’를 클릭해 주셔야 검색 조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검색 조건에 CCL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으나 ‘사용권한’을 클릭해 이미지들을 필터링 해 주시면 됩니다.

다. 음악 저작물의 이용

NPO에서 외부 행사를 진행할 때 강당 등에서 음악 저작물을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리 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NPO의 경우라면 최근 개정된 공연권 조항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116) 서울시NPO지원센터, [실무팁] 저작권_ 자유이용허락표시_이미지검색_2부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755&sfl=wr_subject&stx=%EC%A0%80%EC%9E%91%EA%B6%8C&sop=and

117)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 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1) 공연권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NPO 행사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경우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NPO의 행사의 경우 음악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음악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연 저작권료의 구성¹¹⁸⁾

한편 공연 저작권료는 ① 공연 사용료(저작권자에게 지불)와 ② 공연 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불)으로 구성되며,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11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2018. 8. 20.

구 성	공연 사용료	공연 보상금	공연 보상금
지 급 대 상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자 등)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기획사, 제작사 등)
결 정 방 법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 수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 불성립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 (공연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결정)	좌동

(4) 개정된 공연권 내용 소개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15평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저작권의 보호방법 - NPO 단체가 저작권자로서 권리의 보호받고자 할 때

가.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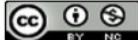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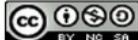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등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등록이라는 절차 없이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하에서 설명할 내용에서 보듯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 추정력이 발생하므로 필요한 경우 저작권의 등록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나.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필요 시 저작권 등록

(1) 저작물의 이용조건 명시

크리에이티브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저작물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CL)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총 6개의 라이선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통 별다른 고민 없이 NPO 웹사이트 하단에 All Right Reserved라는 표기를 통해 저작권을 모두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곤 하는데 NPO의 저작물의 경우 아래 크리에이티브커먼즈(Creative Commons)의 이용조건 중 저작물의 성격에 맞게 아래 6가지 조합 중 적합한 이용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CL 6가지 종류〉¹¹⁹⁾

라이선스	문자표기	바로가기
	CC BY	저작자표시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119) <http://www.bloter.net/archives/132807>

〈CCL의 4가지 요소¹²⁰⁾

저작자 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2) 저작물의 등록¹²¹⁾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등록하면 아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추정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증책임의 전환)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②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을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120) <http://www.bloter.net/archives/132807>

121)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registration/index.do>

③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보호기간의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⑤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등록 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이용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 4단계로 진행됩니다.

6

기타 NPO와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실용신안권

아래에서는 NPO의 로고 등 NPO 활동에서 저작권 외 보호해야 할 지적재산권으로 실용신안권의 특징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허와 비교한 실용신안권의 특징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실용신안의 출원 방법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 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임에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이규홍 외 3인, 저작권과 침해, 2016.

정진근, 저작권 라이선스 위반의 해석론,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이용 가이드북, 2018.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제7장

NPO와 개인정보보호

제7장

NPO와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 법령 일반

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체계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으로 두고 분야별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분야별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¹²²⁾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단체, 개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부분의 NPO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령 해석사례에서 보듯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NPO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22) 약칭: 정보통신망법

Q.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NPO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가요?

일반적으로 학술·종교·자선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습니다.¹²³⁾

나.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Q. 단체의 대표자 성명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 단체명, 사업자주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전화가 아닌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나 개인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¹²⁴⁾

123) Internet & Security Focus, 개인정보보호법령질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2.

124)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상담 사례집, 2017.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NPO 개인정보보호 실무

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약¹²⁵⁾

수집	수집 이용 (15조)	처리 제한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22조)	민감정보(23조) 고유식별번호(24조)
	최소수집(16조)	주민등록번호(24조의2)
이용 및 제공/위탁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 (18조)	영업양도양수(27조) (민간)
	제3자 제공(17조)	국외이전(17조)
	처리위탁(26조)	
저장 및 관리	안전조치의무(29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34조)
	처리방침(3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32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31조)	
파기	파기(21조)	

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소개¹²⁶⁾

(1) 수집 및 이용

(가) 수집·이용 시 고지 및 동의 획득 원칙(notice and consent)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5)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126) 2014년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주요 최신 쟁점〉 참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¹²⁷⁾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NPO 개인정보보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2014년 개정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 등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127)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NPO 활동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상황을 예시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모두 제시한 각 근거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외에도 실무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하는 경우 반드시 근거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사한 활동가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보관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임금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5년간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Q.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명세 보존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45호의2 서식).

Q. 공공기관에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연명부(連名簿)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과거에는 다수인 민원 신청을 주도하는 단체 대표 등이 연명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하더라도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만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주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NPO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수집에 필요한 동의서 양식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¹²⁸⁾ 아래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강사료 또는 토론비 지급을 위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단체는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자택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강사료 지급 및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사료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귀하는 위의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사료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¹²⁹⁾

동의 () / 미동의 ()

128) <https://www.privacy.go.kr> 자료마당/지침자료 게시판 참조.

129)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의가 필요한 고유식별번호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형태로 예시함.

**Q. 홈페이지에 NPO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이나 행사 관련 사진을 게시하고자 하는
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등 동의 예외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학생들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¹³⁰⁾

(2) 제공 또는 위탁

(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3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상담 사례집, 2017.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의 차이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탁과 구분됩니다. 예컨대 NPO와 협업하고 있는 제3의 업체에 NPO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의 업무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하 생략 -

Q.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참고판례〉 이른바 로앤비 사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라고 할 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제3자 제공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미 동의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동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다(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

참고판례는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에 대해 교수라는 공적인 존재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해당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개별 사안별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참고판례가 영리적 목적임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비추어보면,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처리자(NPO)의 업무 목적을 위해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NPO의 경우 기부금업무의 온라인 처리를 위해 CMS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CMS 업체에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부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같은조 제4항 이하에서와 같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

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3) 저장 및 관리

(가)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세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NPO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NPO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방법은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되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례가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인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NPO 역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공지하여야 합니다.

(4) 파기

(가) 개인정보 파기 시점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을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파기의 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의 안전한 파기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 방안

(1)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시행령 제59조).

(2)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제44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6조, 제47조).

-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상담 사례집, 2017.

2014년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주요 쟁점, 2014.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제8장

NPO가 알아야 할 그 외 내용

제8장

NPO가 알아야 할 그 외 내용

1

NPO와 정보공개청구

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중요성

NPO 활동에 있어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 실현뿐 아니라 행정 감시 등 각 단체 고유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88헌마22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법 시행 이후 참여연대의 1998년에 정보공개사업단의 발족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설립되어 정보공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청구정보가 비록 비공개규정에 해당하여도 공개됨으로써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장되는 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 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령

현재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령은 크게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으로 나뉩니다.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사전 공개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법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다. 정보공개청구 방법¹³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무소

131) 이하 내용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https://opengirok.or.kr>) 정보공개청구가이드에서 발췌 및 인용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아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는 정부의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www.open.go.kr)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정보	원문정보	공개청구	공개현황	공개제도	도우미
기관별 테마별 BEST 사전정보	기관별 테마별 최신 원문정보 BEST 원문정보 장관결재문서	정보목록 청구신청	원문공개율 원문다운로드수 사전정보수 원문정보대상	제도안내 법령 서식 접수처 수수료안내 연차보고서 정보공개편람	공지사항 FAQ 건의사항 정보공개는 쉽다 정보공개 BI 안내 홍보캐릭터 소개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¹³²⁾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¹³²⁾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 안내(<https://www.open.go.kr/>)

청구서 기재사항은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입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마. 불복절차¹³³⁾

	이의신청	행정심판	行政소송
기간	비공개결정 이후 30일 이내	비공개결정 이후 90일 이내	비공개결정이후 90일 이내
방법	청구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정보공개시스템이용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법원에 소장 제출 전자소송 이용 가능
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 범위로 연장가능)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에 한해 30일 범위로 연장 가능)	
특징	비용 소요되지 않음		인지대 및 송달료 발생 (행정소송소가 5천만 원)

비공개 결정 시 공공기관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133)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 안내(<https://www.open.go.kr/>)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처분을 내린 공공기관별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다릅니다. 정보비공개(부분공개 및 부존재) 결정처분 기관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불복절차인지, 이의신청에 따른 불복절차인지 분명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심판이지만, 처음의 정보비공개 당시에 대한 건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각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인지에 따라 처분내용/처분이 있음을 안 날/청구취지가 달라져야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3)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소장 견본〉¹³⁴⁾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관악구 신림 6동 1028	↳ 각종 서류 등을 송달 받을 주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피 고	국토교통부 장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궁극적으로 열고자 하는 판결의 내용을 적는 곳인데, 역시 처분날짜와 처분이름을 정확히 적어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3. 4. 예 한 GTX 전철건설현황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쓰면 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4. GTX 전철건설현황 등에 관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송달 받고 2018. 4.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6. 1. 행정심판 기각결정을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행정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갑 제2호증 행정심판기각결정	
	갑 제3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갑 제4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나머지는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납부서 1통	
	2018 . 11. 1.	
	원고 홍 길 동 ⑩	
서울행정법원 귀중		↳

134)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참조

2

NPO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¹³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지자체 업무 위탁 기관(단체)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인 NPO(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NPO의 경우 공직자 등과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가 금지 됩니다. 공직자 등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대상	내용
공직자 등	공무원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정부출자/출연/보조기관: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등, 기타 정부 업무 위탁 기관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및 지자체 업무 위탁 기관 단체	

135)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이해(2018)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대상	내용
그 외 대상	사립학교의 장+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방과후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유치원교사 X) 제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인턴기자, 보도나 취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포함 - 기업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포함
그 외 대상	공무수행사인	<p>“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 위임 위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표자도 포함됨, 소속구성원인 개인 제외) - 파견: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심의 평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학교의 경우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힌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¹³⁶⁾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직유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업체 직원
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기자 등 단시간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부 감독, 코치 •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 기간제교사, 유치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교사 • 겸임교원, 명예교수

13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이해, 2018.

나.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아래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1. 인사 허가 등 처리	8.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등에 개입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사용 수익 점유 등
3. 채용 승진 등 인사개입	10. 입학 성적 등 업무처리 조작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처리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결과 조작 등
6. 입찰 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 뮤인
7.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개입	14.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처리

부정청탁금지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액수〉

위반유형	과태료 액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2항).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 원 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 대상 아님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 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기부금품법, 하객제공음식, 프레스티켓 등)

(2) 예외 사유

(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품목	의의	기액요건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3만 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등) 제외한 일체의 물품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	5만 원
축의금/조의금	결혼과 장례에 한정한 축의금/조의금/화환/조화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참고판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기 하루 전 담당 경찰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사례에서 판례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제공 가액의 2백에 해당하는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반자가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이 맡으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된 점, 공직자 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고소인과 해당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이라는 위반자와 공직자 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과20 결정).

Q.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주무관청 주무관이 식당에 있는 것을 보고 식사비 2만 8천 원을 몰래 지불해 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사대금을 별도로 결제해준 경우에는 3만 원 이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과76 결정).

(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 내용 및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에 따라 정당한 권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면 자문에 대한 자문료가 지급된 사례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며,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친목회의 요건은 ①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의사결정기관·대표자 존재, ③ 정관·회칙 등 내부규정 존재, ④ 구성원 전체의 회비 부담 등입니다.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하지만, 친목회 회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마)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이때 행사는 행사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참석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성, 공식적 초청에 따른 공식적 행사여야 하며, 해당 음식물 등은 다른 유사·동종 행사 제공 수준으로 정상적 비용처리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이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만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판례는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이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1인당 2만 원), 식사(1인당 3만 원) 등을 제공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업체가 약 10년간 200회가 넘게 개최해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참석자가 정부, 제조, 금융 등 전 산업군의 IT 담당 부서원으로서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않은 점, 영화세미나 관련 초대장이 작성 및 배포된 점, 행사내용은 IT 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여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통상적,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식사는 1인당 3만 원, 영화는 1인당 2만 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해 온 세미나 방식으로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영화세미나 개최를 위한 대관료, 식사와 영화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업체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된 점, 영화, 식사 및 기념품 수건이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6호의 통상적,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결정).

(바)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이 경우 판단기준은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가 있는지 여부,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 로고가 자수된 수건(2,500원)은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¹³⁷⁾

(사)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 장학재단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품 수수,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학칙 및 세부규정에 따른 장학금 수수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참고판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기 하루 전 담당 경찰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사례에서 판례는 금품의 제공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동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과20 결정).

(3)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이 조항은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137) 대전지방법원 2017. 3. 17.자 2016과527 결정.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시험출제위원회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득한 학교 출강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 원 ※ 1시간 상한액+ 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이해, 2018.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가이드.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번호	신고 내용	관할 기관	1월	2월	3월
①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반기신고대상은 1월 10일, 7월 10일)	관할세무서(홈택스)	10일	10일	10일
②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반기신고대상은 1월 10일, 7월 10일)	관할구청(위택스or이택스)	10일	10일	10일
③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소득)	관할세무서(홈택스)		말일	
④	자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관할세무서(홈택스)		말일	
⑤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관할세무서(홈택스)			10일
⑥	전년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과세사업이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홈택스)		10일	
⑦	계산서 합계표 제출(과세사업이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홈택스)		10일	
⑧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과세사업이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홈택스)	25일 (확정)		
⑨	법인세 신고납부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	관할세무서(홈택스)			31일
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관할세무서(홈택스)			
⑪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할구청(위택스or이택스)			
⑫	사업계획 및 예산서, 결산서, 재산목록 제출	주무관청		말일	
⑬	외부회계감사 (자산 100억 원 이상)	관할세무서(홈택스)			31일
⑭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관할세무서(홈택스)			31일
⑮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출연재산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관할세무서(홈택스)			31일
⑯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국세청(홈택스) / 홈페이지			31일
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주무관청			31일
⑲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국세청(홈택스)			
⑳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㉑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7일		
㉒	기부금 발급명세서 제출	관할세무서(홈택스)			
㉓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정일이 속하는 1월 1일부터 6년간 유지)	주무관청			
㉔	전용계좌 개설신고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 기준)	관할세무서(홈택스)			
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일	15일	15일
㉖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0일
㉗	고용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근로복지공단			15일
㉘	취업규칙	관할 고용노동청			

NPO 법률지원 매뉴얼

발행인 회장 박 종 우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발행일 2019. 3.

전 화 02) 6200-6200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